LAZARD
ASSET MANAGEMENT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lk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2 년 9 월 3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2 년 10 월 1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자신탁의 수익증권 (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lkam.co.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 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2.09.30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87131]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분 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760	1.000	1.390	181	367	560	963	2,0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2.260	1.500	1.580	232	444	637	963	2,0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260	0.500	1.210	129	264	403	697	1,533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A 클래스와 C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A-E 클래스가 없어, 투자시 총비용이 C-E 클래스와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g.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C1클래스의 경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1/10/01 ~ 2022/09/30	최근 2년 2020/10/01 ~ 2022/09/30	최근 3년 2019/10/01 ~ 2022/09/30	최근 5년 2017/10/01~ 2022/09/30	설정일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	2008-10-01	-25.01	-0.69	2.22	-0.64	4.57
비교지수(%)		-29.76	-3.77	1.47	-2.08	2.88
수익률 변동성(%)		13.18	15.71	21.99	18.88	19.16

(주1) 비교지수 : KOSPI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명재엽	1983	책임운용역(부장)	3개	60억원	-23.62	1.09	-23.62	1.09	6년6개월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운용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며, 따라서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이 변동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 입 방 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 매 방 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 매 수수료	A, C1, C2, C3, C4, C5, C-I ,I, S, Ce, Cw, A-G,C-G: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C-P, C-P2,S-P,C-G,C-Pe,C-P2e :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www.lk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대표번호: 02-6220-16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lkam.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 좌
효력발생일	2022년 10월 19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 lk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g.6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1)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lk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lkam.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lkam.co.kr)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87131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88492
클래스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88493
클래스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09
클래스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1
클래스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2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3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89250
클래스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A3960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0963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B4701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B5191
클래스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B5869
클래스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5870
클래스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B5871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803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805
클래스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V077
클래스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V08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주 1)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lk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87131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88492
클래스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88493
클래스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09
클래스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1
클래스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2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96713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89250
클래스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A3960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0963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B4701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B5191
클래스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B5869
클래스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5870
클래스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B5871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803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805
클래스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V077
클래스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V08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8.10.01	최초 설정
2008.10.20	투자신탁약관변경: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방안추가
2008.10.22	투자신탁약관변경: 클래스 C2 추가신설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투자신탁 =>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10.05.06.	클래스 C 판매보수 인하
2010.05.17.	클래스 C2 가입자격 변경
2010.10.25.	1) 종류 수익증권 변경 (클래스 C => 클래스 C1, 클래스 C2 => 클래스 C-I) 2) 종류 수익증권 신설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2010.10.2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고희탁 -> 동일권)
2011.05.13.	클래스 I 가입자격 법령 변경
2011.05.24.	클래스 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변경
2012.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김홍석),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위험 고지 추가
2013.05.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김홍석)
2013.08.14	법 개정사항 반영
2014.02.28	클래스 S 추가신설
2014.03.0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김세훈)
2015.07.01	클래스 Ce, 클래스 CW 추가신설
2015.07.27	클래스 C-P, 래스 C-P2, 클래스 S-P 추가신설
2016.07.02	펀드 위험등급 변경
2016.07.30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환매 기준시점 변경(15 시→15 시 30 분)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7.02.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동일권 -> 김세훈)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세훈 -> 명재엽)
2017.04.29	클래스 A-G, 클래스 C-G 추가신설
2017.08.02	클래스 C-Pe, 클래스 C-P2e 추가신설
2017.10.23	책임운용 전문인력 변경 (김세훈 -> 명재엽)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삭제
2019.09.18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한글 클래스 명칭 부기 반영
2019.10.25	투자위험 등급 연례갱신
2020.10.30	펀드결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연례갱신 (3 등급→2 등급)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1.10.13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2.10.19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수익자총회 관련 사항 일부 변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0 층 (우)04520 (대표전화: 02-6220-1600, 홈페이지: www.lkam.co.kr)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명재엽	1983	책임운용역(부장)	3개	60억원	-23.62	1.09	-23.62	1.09	6년6개월

성명	나이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명재엽	1983 년생	책임운용 전문인력	-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리서치 애널리스트(2013~현재) - 슈로더자산운용, 리서치 애널리스트 (2010~2013) - 슈로더자산운용, 주식 트레이더 (2008~2010)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8) - CFA (2014)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운용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며, 따라서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이 변동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2020.09.30 순자산액 기준

(2)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책임운용인력	운용기간
명재엽	2017.10.23 ~ 현재

(주 1) 2022.09.30 기준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3) 최근 3 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인력	운용기간
명재엽	2017.02.14 ~ 2017.10.22

(주 1) 2022.09.30 기준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 2) 2022.09.30 기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클래스 A	클래스 C- I	클래스 I	클래스 S	클래스 Ce	클래스 CW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최초설정일	2008.10.01	2008.11.11	2011.05.20	2014.04.29	2015.07.06	2015.07.03
가입자격	제한없음	납입금액이 5 억 이상인 경우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가입자격 제한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보유한 가입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일반법인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클래스	가입자	
수수료	**선취판매**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	-
	후취판매	-	-	-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환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판매회사	연 1.0000%	연 0.5000%	연 0.0300%	연 0.3500%	연 0.5000%	연 0.0000%
	신탁업자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총 보수	연 1.7600%	연 1.2600%	연 0.7900%	연 1.1100%	연 1.2600%	연 0.7600%
	기타비용	연 0.0028%	-	-	연 0.0006%	연 0.0029%	연 0.0000%
	총보수・비용	연 1.7628%	연 1.2600%	연 0.7900%	연 1.1106%	연 1.2629%	연 0.7600%
	(동종유형 총 보수)	연 1.3700%	-	-	연 1.5900%	연 1.1800%	-
	합성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연 1.7628%	연 1.2600%	연 0.7900%	연 1.1106%	연 1.2629%	연 0.7600%
	증권 거래비용	연 0.1670%	-	-	연 0.1715%	연 0. 1660%	연 0.1666%

구분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최초설정일	2008.10.01	2008.10.01	2008.10.01	2008.10.01	2012.10.15

가입자격		제한없음	클래스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	클래스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	클래스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	클래스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
수수료	선취판매	-	-	-	-	-
	환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판매회사	연 1.5000%	연 1.3750%	연 1.2500%	연 1.1250%	연 1.0000%
	신탁업자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총 보수	연 2.2600%	연 2.1350%	연 2.0100%	연 1.8850%	연 1.7600%
	기타비용	-	-	-	연 0.0033%	연 0.0027%
	총보수・비용	연 2.2600%	연 2.1350%	연 2.0100%	연 1.8883%	연 1.7627%
	(동종유형 총 보수)	연 1.5900%	연 1.5900%	연 1.5900%	연 1.5900%	연 1.5900%
	합성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연 2.2600%	연 2.1350%	연 2.0100%	연 1.8883%	연 1.7627%
	증권 거래비용	-	-	-	-	연 0.1685%

구분	클래스 C-P	클래스 C-P2	클래스 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최초설정일	2015.07.27	2015.07.27	2015.07.27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	선취판매	-	-	-
	환매	없음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판매회사	연 0.6700%	연 0.6500%	연 0.2000%
	신탁업자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사무관리회사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총 보수	연 1.4300%	연 1.4100%	연 0.9600%
	기타비용	연 0.0020%	연 0.0000%	연 0.0000%
	총보수・비용	연 1.4320%	연 1.4100%	연 0.9600%
	(동종유형 총 보수)	-	-	-
	합성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연 1.4320%	연 1.4100%	연 0.9600%
	증권 거래비용	연 0.1687%	연 0.1668%	연 0.1661%

구분	클래스 A-G	클래스 C-G	클래스 C-Pe	클래스 C-P2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최초설정일	2017.04.29	2017.04.29	2017.08.02	2017.08.02
가입자격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되,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선취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선취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되,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판매 보수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	선취판매	납입금액의 0.6% 이내	-	-	-
	환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연 0.7000%
	판매회사	연 0.6000%	연 0.9000%	연 0.3700%	연 0.3500%
	신탁업자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연 0.0350%
	사무관리회사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연 0.0250%
	총 보수	연 1.3600%	연 1.6600%	연 1.1300%	연 1.1100%
	기타비용	-	-	연 0.0000%	연 0.0000%
	총보수・비용	연 1.3600%	연 1.6600%	연 1.1300%	연 1.1100%
	(동종유형 총 보수)	-	-	-	-
	합성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연 1.3600%	연 1.6600%	연 1.1300%	연 1.1100%
	증권 거래비용	-	-	연 0.1644%	연 0.1667%

(주 1)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 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 3)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철저한 상향식 투자분석에 입각해 투자합니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기준)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의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8)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차입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30 일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추가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 [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동일종목증권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동일법인발행 주식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4)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6)계열회사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7)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1)~4)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1)~4)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5)~9)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2)~5) 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2)의 본문,4),5)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1)주요 투자전략
-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주로 경쟁력있고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에 장기투자합니다.
- 독립적인 리서치(기업방문 등) 를 중요시합니다.
- 빈번한 주식편입비 조정과 비교지수를 쫓는 투자방식을 지양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KOSPI 지수 X 100%

나. 위험관리

1)라자드의 글로벌 시스템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성과요인 및 위험요인의 세부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중적인 기업방문과 수시점검으로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환헤지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주식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이득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게 되면 시장상황(이자율변동)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이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겨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대한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주식배당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등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간 투자신탁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2.39%**로 **2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위험등급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므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분류되는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구분	선취판매 수수료부 과여부	후취판매 수수료부 과여부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자격 제한없음	**있음**	없음

클래스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가입자격 제한없음	없음	없음
클래스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	없음	없음
클래스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	없음	없음
클래스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	없음	없음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	없음	없음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이 5 억 이상인 가입자	없음	없음
클래스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일반법인	없음	없음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있음**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가입자격 제한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가입자	없음	없음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보유한 가입자	없음	없음
클래스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없음

클래스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없음
클래스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없음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되,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선취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선취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있음**	없음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되,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판매 보수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없음
클래스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없음	없음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클래스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없음	없음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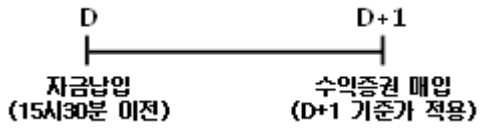

(나)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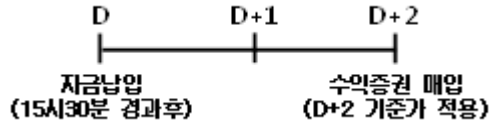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인 1,000 원으로 합니다.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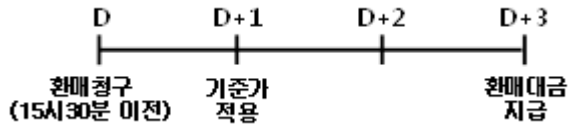

(나)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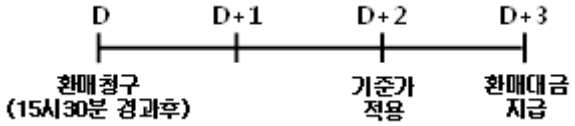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수익증권 보유한 기간이란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환매시)	클래스 A,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 클래스 C-I, 클래스 I, 클래스 S, 클래스 Ce, 클래스 CW, 클래스 A-G, 클래스 C-G	비고(지급시기)
	이익금의 70%	환매시
	클래스 C-P, 클래스 C-Pe, 클래스 C-P2, 클래스 C-P2e, 클래스 S-P	
	없음	

주 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주 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5 시 30 분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가)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라)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클래스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이 되는 경우 클래스 C1 수익증권을 클래스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이 되는 경우 클래스 C2 수익증권을 클래스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이 되는 경우 클래스 C3 수익증권을 클래스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클래스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이 되는 경우 클래스 C4 수익증권을 클래스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신탁계약서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클래스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클래스별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클래스별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클래스 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클래스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클래스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lkam.co.kr) ・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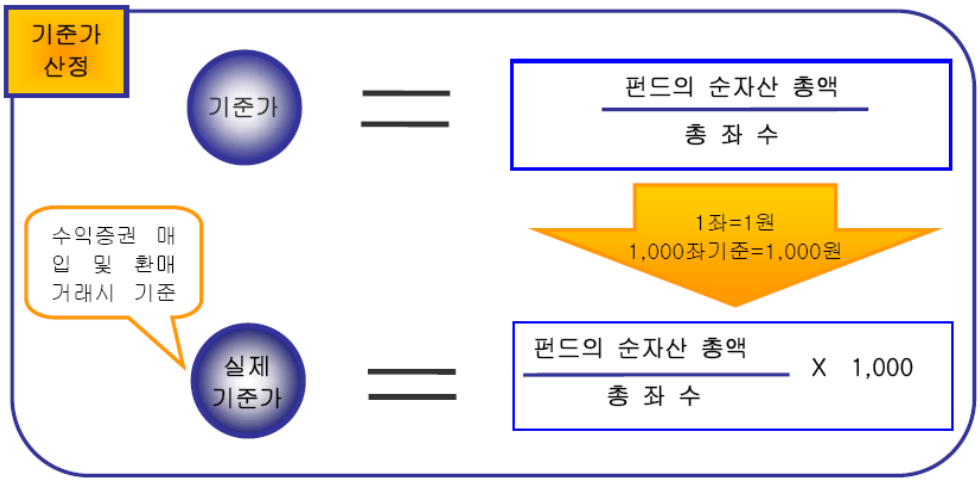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 등(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 조제 2 항에 의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리스크 매니저
5.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 클래스 A-G: 납입금액의 0.6%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클래스 I, 클래스 S, 클래스 Ce, 클래스 CW, 클래스 C-P, 클래스 C-P2, 클래스 S-P, 클래스 C-G, 클래스 C-Pe, C-P2e : 없음	매수시
환매수수료	클래스 A,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클래스 I, 클래스 S, 클래스 Ce, 클래스 CW, 클래스 A-G, 클래스 C-G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클래스 C-P, 클래스 C-P2, 클래스 S-P, 클래스 C-G, 클래스 C-Pe, C-P2e: 없음	환매시

후취판매수수료	클래스 A,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클래스 I, 클래스 Ce, 클래스 CW, 클래스 C-P, 클래스 C-P2, 클래스 S-P, 클래스 A-G, 클래스 C-G, 클래스 C-Pe, C-P2e: 없음 클래스 S: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3 년미만 환매시
합계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 + 환매수수료 클래스 A-G: 납입금액의 0.6%+ 환매수수료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클래스 I, 클래스 Ce, 클래스 CW, 클래스 C-G: 환매수수료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 환매수수료 클래스 C-P, 클래스 C-P2, , 클래스 C-Pe, C-P2e ,클래스 S-P: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보수	1.7600	
	기타비용	0.002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628	-
	(동종유형 총 보수)	1.37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628	-
	증권 거래비용	0.167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600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60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클래스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75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2.135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1350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35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클래스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5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2.010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0100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10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클래스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25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8850	
	기타비용	0.0033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8883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883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7600	
	기타비용	0.0027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627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627	
	증권 거래비용	0.168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I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2600	
	기타비용	0.0036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2636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636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0.790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79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790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5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1100	
	기타비용	0.0006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1106	-
	(동종유형 총 보수)	1.59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106	
	증권 거래비용	0.171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2600	
	기타비용	0.0029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2629	-
	(동종유형 총 보수)	1.1800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629	
	증권 거래비용	0.166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0.76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76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7600	
	증권 거래비용	0.1666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67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4300	
	기타비용	0.002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4324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320	
	증권 거래비용	0.1687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65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41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41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100	
	증권 거래비용	0.1668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2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0.96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96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9600	
	증권 거래비용	0.1661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6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360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36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60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6600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66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600	
	증권 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7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13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13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300	
	증권 거래비용	0.164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클래스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500	
	신탁업자보수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총 보수	1.11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1100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100	
	증권 거래비용	0.1667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는 2020.10.01 ~ 2021.09.30 입니다.

-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는 2019.10.01 ~ 2020.09.30 입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라자드주식형투자신탁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80.688	367.146	559.557	963.007	2089.90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0.688	367.146	559.557	963.007	2089.902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29.445	263.687	402.903	697.003	1533.07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9.445	263.687	402.903	697.003	1533.078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W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77.9	159.088	243.703	423.799	944.91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9	159.088	243.703	423.799	944.918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46.779	298.742	456.073	787.603	1724.483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6.779	298.742	456.073	787.603	1724.483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P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44.525	294.188	449.171	775.86	1699.77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4.525	294.188	449.171	775.86	1699.777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S-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98.4	200.752	307.214	533.137	1182.27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4	200.752	307.214	533.137	1182.278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C-P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15.825	236.1	360.995	625.365	1380.446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5.825	236.1	360.995	625.365	1380.446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C-P2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13.775	231.944	354.677	614.548	1357.30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3.775	231.944	354.677	614.548	1357.301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C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80.678	367.126	559.527	962.957	2089.799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0.678	367.126	559.527	962.957	2089.799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S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13.835	232.065	354.861	614.862	1357.973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3.835	232.065	354.861	614.862	1357.97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또는)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 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 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 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 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 소득세법 」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당해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 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5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 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제 9기, 8기, 7기, 4기, 3기, 2기, 1기의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 기 (2021.10.01 - 2022.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3 기 (2020.10.01 - 2021.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2 기 (2019.10.01 - 2020.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1 기 (2018.10.01 - 2019.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0 기 (2017.10.01 - 2018.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9 기 (2016.10.01 - 2017.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8 기 (2015.10.01-2016.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7 기 (2014.10.01-2015.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6 기 (2013.10.01-2014.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 기 (2012.10.01-2013.09.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 기 (2011.10.01-2012.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3 기 (2010.10.01-2011.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2 기 (2009.10.01-2010.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제 1 기 (2008.10.01-2009.09.30)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 대차대조표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2022.09.30)	(2021.09.30)	(2020.09.30)
운용자산	3,839,353,700	6,238,263,090	9,187,440,961
증권	3,815,732,000	6,181,978,000	8,960,065,00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3,621,700	56,285,090	227,375,96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913,489	19,305,365	83,083,279
자산총계	3,845,267,189	6,257,568,455	9,270,524,24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7,820,026	50,881,267	127,767,683
부채총계	17,820,026	50,881,267	127,767,683
원본	5,383,909,997	6,545,282,249	12,769,315,736
수익조정금	-92,875,464	-447,703,409	1,151,890,477
이익잉여금	-1,463,587,370	109,108,348	-4,778,449,656
자본총계	3,827,447,163	6,206,687,188	9,142,756,557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 통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2021.10.01 - 2022.09.30)	(2020.10.01 - 2021.09.30)	(2019.10.01 - 2020.09.30)
운용수익	-1,221,373,428	2,760,602,280	790,099,924
이자수익	314,780	130,321	223,372
배당수익	123,547,067	202,131,400	274,388,880
매매/평가차익(손)	-1,345,235,275	2,558,340,559	515,487,672
기타수익	0	343,620	685,869
운용비용	80,644,884	129,538,827	173,988,133
관련회사 보수	80,644,884	129,538,827	173,988,13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340,199	2,210,791	3,130,209
당기순이익	-1,303,358,511	2,629,196,282	613,667,451
매매회전율	95.34	181.89	141.17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투자신탁(전체)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59	59	4	4	13	12	50	38
2020.10.01 - 2021.09.30	116	92	1	1	59	58	59	62
2019.10.01 - 2020.09.30	215	154	16	12	115	82	116	92

(주1) 2020.10.01 - 2021.09.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93,624좌/394,121원

(2) 클래스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42	40	0	0	7	6	36	26
2020.10.01 - 2021.09.30	74	54	0	0	33	29	42	40
2019.10.01 - 2020.09.30	106	71	1	1	33	22	74	5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클래스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10.01 - 2019.09.30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4) 클래스 C-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0.01 - 2020.09.30	33	23	0	0	33	23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5) 클래스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0.01 - 2016.09.30	151	151	38	38	189	176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6) 클래스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2	1	0	0	0	0	2	1
2020.10.01 - 2021.09.30	12	8	0	0	11	9	2	1
2019.10.01 - 2020.09.30	23	14	0	0	11	7	12	8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7) 클래스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1	1	0	0	0	0	1	1
2020.10.01 - 2021.09.30	5	3	0	0	4	3	1	1
2019.10.01 - 2020.09.30	6	4	0	0	1	1	5	3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8) 클래스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4	3	0	0	1	1	3	2
2020.10.01 - 2021.09.30	6	4	0	0	2	2	4	3
2019.10.01 - 2020.09.30	7	4	1	0	2	1	6	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9) 클래스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0	0	0	0	0	0	0	0
2020.10.01 - 2021.09.30	1	0	0	0	0	0	0	0
2019.10.01 - 2020.09.30	1	0	0	0	0	0	1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0) 클래스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0.01 - 2020.09.30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1) 클래스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0.01 - 2020.09.30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2) 클래스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0.01 - 2021.09.30	0	0	0	0	0	0	0	0
2019.10.01 - 2020.09.30	14	9	0	0	14	9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3) 클래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13	13	0	0	3	3	10	7
2020.10.01 - 2021.09.30	22	16	0	0	9	8	13	13
2019.10.01 - 2020.09.30	31	21	14	9	23	15	22	16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4)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2	2	0	0	1	1	1	1
2020.10.01 - 2021.09.30	6	4	0	0	4	4	2	2
2019.10.01 - 2020.09.30	8	6	0	0	3	2	6	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5) 클래스 S -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1	1	0	0	0	0	1	0
2020.10.01 - 2021.09.30	1	1	0	0	1	1	1	1
2019.10.01 - 2020.09.30	2	1	0	0	0	0	1	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16) 클래스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0	0	0	0	0	0	0	0
2020.10.01 - 2021.09.30	0	0	0	0	0	0	0	0
2019.10.01 - 2020.09.30	0	0	0	0	0	0	0	0

(17) 클래스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0.01 - 2022.09.30	0	0	0	0	0	0	0	0
2020.10.01 - 2021.09.30	0	0	0	0	0	0	0	0
2019.10.01 - 2020.09.30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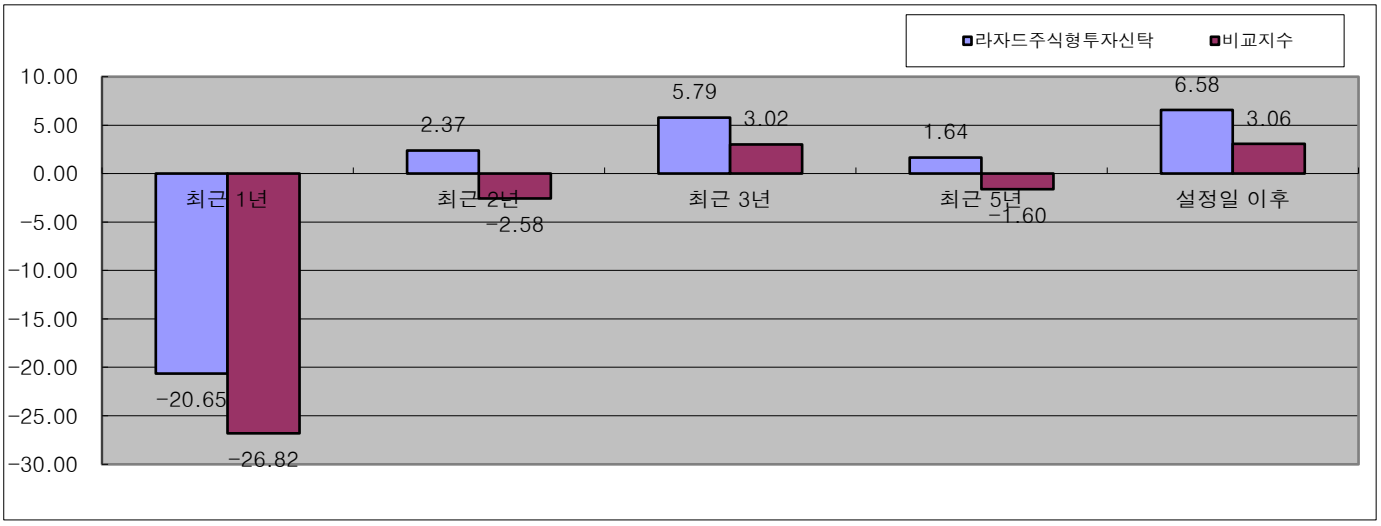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0.05 ~ 22.10.04	20.10.05 ~ 22.10.04	19.10.05 ~ 22.10.04	17.10.05 ~ 22.10.04	08.10.01 ~ 22.10.04
라자드주식형투자신탁	-20.65	2.37	5.79	1.64	6.58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3.06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21
라자드주식형투자신탁A	-22.09	0.57	3.93	-0.14	4.76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3.06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2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e	-21.68	1.08	4.46	0.37	-5.02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0.67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8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W	-21.28	1.59	4.99	0.87	-4.56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0.65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84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P	-21.82	0.91	4.28	0.19	-5.23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1.19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60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P	-21.80	0.93	4.30	0.22	-3.69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1.26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8.63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S-P	-21.44	1.39	4.78	0.67	-4.70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1.34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60
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	-21.57	1.21	4.60		0.34
비교지수	-26.82	-2.58	3.02		-2.32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32
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	-21.56	1.24	4.63		-0.18
비교지수	-26.82	-2.58	3.02		-2.86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28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C5	-22.09	0.57	3.93	-0.14	0.04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1.35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8.45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S	-21.56	1.23	4.62	0.52	0.19
비교지수	-26.82	-2.58	3.02	-1.60	1.37
수익률변동성(%)	14.06	16.10	22.14	19.03	19.43

(주 1)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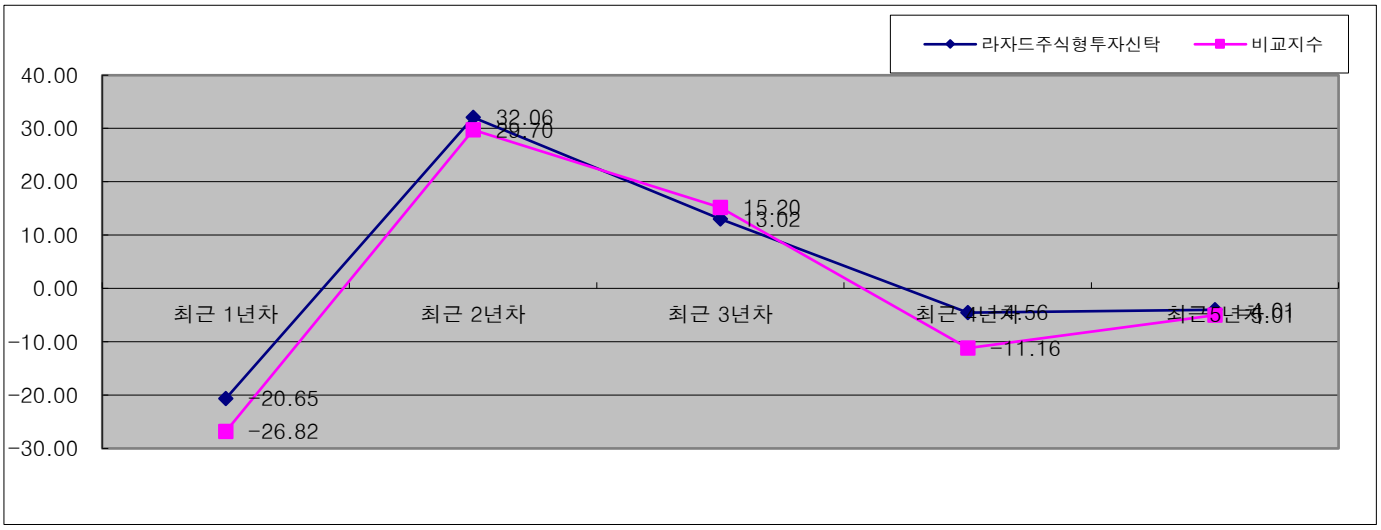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1.10.05 ~ 22.10.04	20.10.05 ~ 21.10.04	19.10.05 ~ 20.10.04	18.10.05 ~ 19.10.04	17.10.05 ~ 18.10.04
라자드주식형투자신탁	-20.65	32.06	13.02	-4.56	-4.01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주식형투자신탁A	-22.09	29.83	11.00	-6.21	-5.70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e	-21.68	30.46	11.57	-5.73	-5.23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W	-21.28	31.09	12.14	-5.28	-4.75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C-P	-21.82	30.24	11.38	-5.90	-5.39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P	-21.80	30.27	11.41	-5.88	-5.37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S-P	-21.44	30.84	11.91	-5.46	-4.94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	-21.57	30.62	11.73	-5.62	-5.92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8.08
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	-21.56	30.66	11.76	-5.60	-8.32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10.61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C5	-22.09	29.83	11.00	-6.21	-5.70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라자드코리아주식클래스S	-21.56	30.65	11.74	-5.60	-5.07
비교지수	-26.82	29.70	15.20	-11.16	-5.01

주 1) 위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2)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와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운용펀드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8)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9)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2.09.30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8	0	0	0	0	0	0	0	0	0	0	38
	(99.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2)	(0.15)	(100.00)
합계	38	0	0	0	0	0	0	0	0	0	0	38
	(99.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2)	(0.1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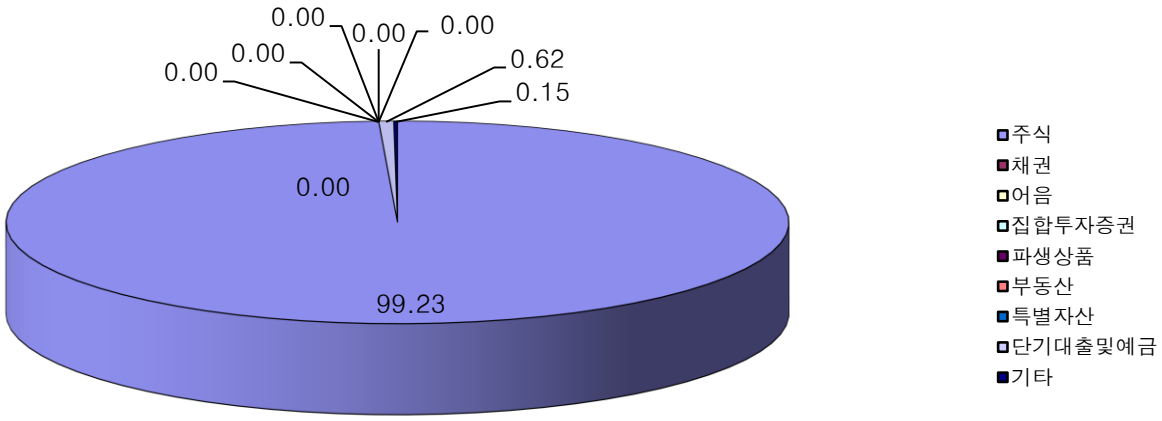

(1) 국내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2022.09.30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9	23.61
2	화학	4	10.80
3	보험	3	7.94
4	기계	3	7.37
5	유통업	3	7.10
6	증권	3	6.65
7	IT부품	2	5.72
8	오락,문화	2	5.57
9	전기가스업	2	4.64
10	금융업	1	3.84
11	기타	6	16.77
합 계		38	100.01

주)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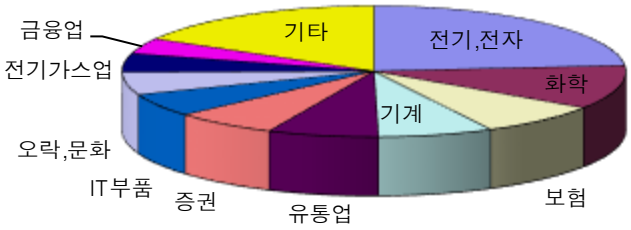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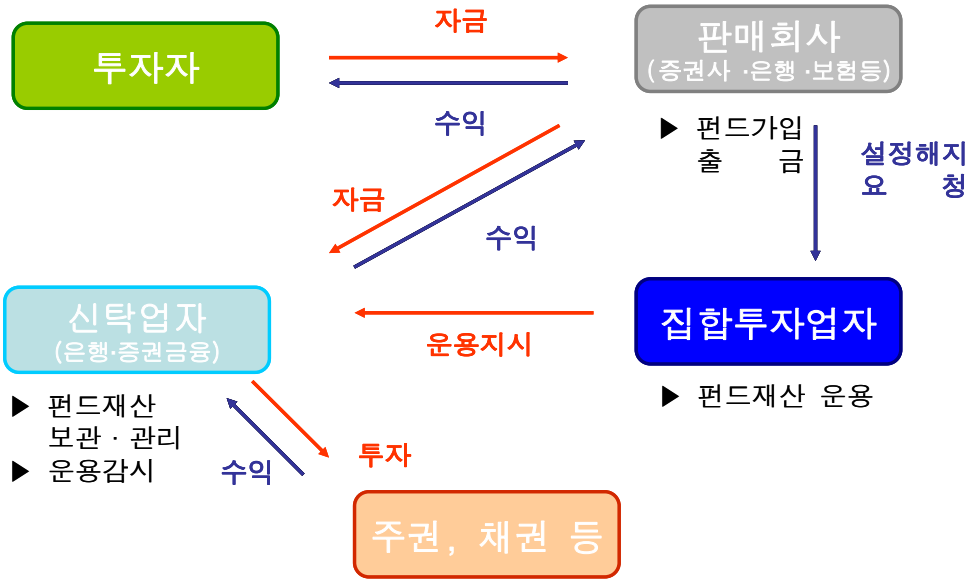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타 10 층 (우) 04520 02-6220-1600 www.lkam.co.kr
회사연혁	2005 년 5 월 현지법인 설립 2005 년 12 월 일임투자자문사 등록 2007 년 9 월 Lazard Asset Management LLC. (모회사)가 금융위에 역외투자자문·일임업 등록 2008 년 6 월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9 년 2 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 현황	Lazard Asset Management LLC. 100% 소유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현금및예치금	13,479	12,975
유가증권	498	498
유형자산	400	740
무형자산	0	0
기타자산	641	639
자산총계	15,019	14,853
부채총계	1,934	1,930
자본금	10,000	10,000
기타불입자본	330	3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9	-339
이익잉여금	3,044	2,939
자본총계	13,085	12,923
부채와 자본총계	15,019	14,853
영업수익	4,912	4,887
영업비용	4,680	4,703
영업이익(손실)	232	184
영업외수익	0	0
영업외비용	2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0	182
법인세비용	125	1
당기 순이익(손실)	105	181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05	176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9.30./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57	0	0	0	2	0	0	0	0	0	0	6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는 매매주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사인 호주 시드니 소재 Lazard Asset Management Pacific 이 수행합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대표번호 1588-7000 www.citibank.co.kr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대표번호 2168-0500** **www.shinhanaitas.co.kr**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KIS 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4 층 T. 02-3215-1400	설립일: 2000. 6. 2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T. 02-399-3350	설립일: 2000. 5. 29 www.koreabp.com

NICE 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 층 T. 02-398-3900	설립일: 2000. 6. 16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첫 문장)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2 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 분의 1 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lk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박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